# 중앙대학교 통일공대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2023.09.14.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통일공대학생대표자회의를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1항 본 세칙은 통일공대학생대표자회의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통일공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사전 의결과 학생대표 자회의의 논의와 의결에 따른다.

#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 제3조(공개 원칙)

1항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항 회기 동안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한다.

#### 제4조(정족수의 원칙)

1항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2항 선거 미실시로 인한 대표자 부재 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발언 자유의 원칙)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저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장의 결정에 반대안을 제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제6조(다수결의 원칙)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단, 회칙 개정의 경우 통일공대 학생회칙 제11장에 따른다.)

제7조(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제8조(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결정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 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표결 재심의 성립요건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3장 안건의 채택과 통과

제9조(원안의 삭제) 안건 원안에 대한 삭제는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0조(안건의 추가 상정) 안건의 추가 상정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1조(회순 변경) 공고된 회순변경은 찬반 토론 없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제4장 의사 진행

제12조(발언권 획득)

1항 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항 발언 시 발언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 제13조(찬반토론)

1항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성과 반대 최대 2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2항 발언 시간과 발언자의 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1.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분 이내
- 2. 질의답변 : 5분 이내, 3인 이하
- 3. 대표 찬반 토론 : 5분 이내
- 4.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 2분 이내
- 5.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자 토론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할 수 있다.
-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제14조(토의 순서) 안건 상정,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원안에 대한 찬

반 토론, 토론 종결,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한다.

#### 제15조(수정안)

1항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제청이 있으면 표결로 해당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항 수정안 상정 이후의 토의 순서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수정안에 대한 찬 반 토론, 토론 종결, 수정안 표결순으로 진행한다.

3항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은 별도 의결 없이 파기한다.

4항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 제16조(기타)

1항 한 안건의 의결이 시작된 시점부터 의결이 종료된 시점까지 자리 이동을 제한한다.

2항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